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944
----------	------

202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홍성룡 의원(찬성자 13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라. 상정결과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성룡 의원)

가.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 등 악행을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징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치구에 대한 권장, 안 제10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 안 제11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교육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군함도(하시마)’가 포함된 근대산업 시설 유산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동 일하게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담고도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¹⁾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 문제 등이 한·일간 외교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유네스코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19. 11월),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적·종교적·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국내에서 육일기 등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1) 김유진, 「일본, ‘군함도’ 유산 왜곡 여전... 외교부 “약속 미이행 유감”」, 경향신문, 2020.12.4.

당하고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인천, 충청남도, 울산에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타·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인천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2020.3.30.
충청남도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2019.9.20.
울산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2020.4. 9.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불 입

집행부 검토 의견

의안번호 1944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홍성룡 의원(대표발의)	2020.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조성(안 제10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발의안('20.8.12.자) 행자위 심사결과 회부('20.8.21.)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발의자와 타시도 사례 및 조례주관부서 논의('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 개념추가, 공공사용 제한관련 시장의 책무 구체적 규정, 일제강점기 전문가 위원회 포함 등(2020. 10. 16. 조례안 발의) 		
부 검토 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위원회설치, 문화조성 등 관련 시책 추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 제정안에 동의함 ○ 다만, 동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실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구체적 정의, 실태조사, 사례연구, 공공공간 운영·관리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사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양해 바람 		
대응방안	○ 별도 대응내용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과	팀장	김남수(☎2133-2702)
		담당	서점덕(☎2133-270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44
----------	------

발의 년 월 일 : 2020년 10월 16일

발의자 : 홍성룡, 김정태,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유용, 이광호, 최웅식, 최정순,
임종국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문화조성 등), 제11조(교육)에 따라 비용 발생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② 안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695,13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695,130천원으로 연평균 339,02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위원회 위원은 제8조에 따라 11명(시의원 1명, 담당 국장 1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2회(정기회 2회 기준)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문화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등(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및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추진하였던 유사사업의 2019년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 조례안 제안 사유와 유사한 사업을 준용하기 위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관련 사업(2019년)을 준용함
- 교육(제11조)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공무원 성인지역량 교육비(강사료, 강의횟수, 교재비)를 준용하여 추계함

- 적용대상 기관(제4조) 제3호 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에 대한 교육 비용은 서울시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대상이 아님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695,130천원

$$\begin{aligned}
 \text{- 총비용} &= \text{위원회 운영 비용} + \text{문화조성 비용} + \text{교육 비용} \\
 &= 21,300\text{천원} + 1,548,830\text{천원} + 125,000\text{천원}
 \end{aligned}$$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구분	세입	-	-	-	-	-	-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의 설치 (제7조)	4,260	4,260	4,260	4,260	4,260	21,300
	문화조성 (제9조제2항)	309,766	309,766	309,766	309,766	309,766	1,548,830
	교육 (제10조)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소계(b)	339,026	339,026	339,026	339,026	339,026	1,695,130
	총비용(b-a)	339,026	339,026	339,026	339,026	339,026	1,695,130

$$1) \text{ 위원회 운영 비용} = \sum_{i=1}^5 (\text{연간위원회운영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위원회 운영 비용 ≈ 4,260천원

$$\approx 3,600\text{천원} + 660\text{천원}$$

$$\approx (200\text{천원} \times 9\text{명} \times 2\text{회}) + (30\text{천원} \times 11\text{명} \times 2\text{회})$$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200천원 × 9명 × 2회 = 3,600천원

. 연간 업무추진경비 : 30천원 × 11명 × 2회 = 660천원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등 2명을 제외한 9명, 업무추진경비는 11명을 기준으로 추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5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2) \text{문화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비용} = \sum_{i=1}^5 (\text{연간문화행사및캠페인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문화조성 비용 ≈ 309,766천원

$$\approx \text{문화행사비용} + \text{캠페인비용}$$

$$\approx 300,000\text{천원} + 9,766\text{천원}$$

· 문화행사 비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유사사업비(300,000천원) 준용

※ 3·1운동 10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2019)

- 사업목적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시민화합 기원

- 추진내용 : 보신각 타종행사, 종로구립합창단 공연 및 태극기물결행진, 100인 만세운동 플래쉬몹 퍼포먼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진전

· 캠페인 비용은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유사사업비(9,766천원) 준용

※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시민 참여 캠페인 「100년 전 그날처럼」(2019)

- 사업목적 :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미를 공감·확산, SNS 등을 활용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활성화

- 추진내용 : 시 대표 SNS #100년전그날처럼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2.8.~3.4.)

서울시×틱톡 3·1절 100주년 기념 챌린지 #100년전그날처럼(2.26.~3.3.)

임정수립 100주년 어린이 기자 '대한독립만세' 손글씨 퍼포먼스(4.11.)

$$3) \text{교육 비용} = \sum_{i=1}^5 (\text{연간교육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교육 비용 ≈ 25,000천원

$$\approx (\text{강사수당} \times \text{강의횟수}) + \text{교재비}$$

$$\approx 15,000\text{천원} + 10,000\text{천원}$$

$$\approx (500\text{천원} \times 30\text{회}) + 10,000\text{천원}$$

· 교육비용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사업 중 공무원 성인지역량 교육비(강사료, 강의횟수 교재비 등) 준용

- 대상 : 서울시 직원 10,000명

- 내용 : 기본과정 및 사업담당자 과정 등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무원 성인지역량 교육 = 35,000천원
	- <u>강사수당</u> <u>500,000원 *30회</u> = <u>15,000천원</u>
	- <u>교재비 등</u> <u>10,000,000원</u> = <u>10,000천원</u>
	-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10,000,000원 = 10,000천원

자료 : 2020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서 및 사업별 설명서 재작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